

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7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09.
제 출 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수도법 개정(2005.12.29)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”에서 “수돗물평가위원회”로 정비하고, 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.

주요골자

- 가. 수도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함(안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).
- 나.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여 규정함 (안 제2조).
- 다.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촉대상을 확대하고 간사와 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(안 제3조 및 안 제7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수도법 제19조의 2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6. 8. 4. - 2006. 8. 24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.

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 “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”를 “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”를 “안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
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3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

제3조제3항중 “수돗물 수질전문가, 소비자, 관계공무원중”을 “상수도 및 수질 관련전문가, 소비자, 시의회의원, 시민단체의 장, 관계공무원중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,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제9조중 “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”을 “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본다.

③(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정 수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정수과장 한 명 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수질관리담당 백 현 숙
	담당자 성명·전화	백 현 숙 (행정 2746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 <u>안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<u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.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도출 및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 3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	<p><u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2. <u>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</u> 3. <u>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</u>
<p>제3조(구성) ① ~ ②(생략)</p> <p>③위원은 <u>수돗물수질전문가, 소비자, 관계공무원</u>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위원은 <u>상수도 및 수질 관련 전문가, 소비자, 시의회의원, 시민단체의 장, 관계공무원</u> 중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7조(간사와 서기) ①(생략)</p> <p>②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시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한다.</p>	<p>제7조(간사와 서기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,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</p>
<p>제9조(결과통보 및 의견반영)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시장은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결과통보 및 의견반영) -----</p> <p>-----</p> <p>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-----</p> <p>-----</p>

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1476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6. 9. 14.
제 안 자 : 도시·건설위원장

수정이유

-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제9조 중 “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”을 “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”으로 수정함.(안 제9조)

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 중 “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”을 “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”으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원안	수정안
제9조(결과통보 및 의견반영)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시장은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.	제9조(결과통보 및 의견반영) ----- ----- <u>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 --</u> -----